

다대홍터부락공유수면매립건의청원의견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접수일자 및 제출자 : 1993. 10. 18—박용웅외 주민 60명

나. 회부일자 : 1993. 10. 25

다. 상정일자 : 제28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1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1993. 10. 27) 상정 채택

2. 취지설명의 요지(소개의원 : 한정동 의원)

- 부산 시민의 식수원 보호라는 대의명분 아래 시행된 하구둑 공사로 수면 생태계 변화에 따른 어장의 황폐화로 인한 수산물 감소로 어민 대다수가 생활고에 시달리는 실정임. 이와 아울러 수자원개발공사의 매립사업 시행에 있어 마을앞 빈지를 제외함으로 해서 본 지역일대가 각종 부유물의 집합지로 전락하여 주변환경의 악취에 지역 주민들은 이중삼중의 고충을 당하고 있는 현실임.
- 이에 청원인들은 어민들의 복리증진과 주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도심 속의 오지인 이 곳을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보다 나은 생의 타전을 마련토록 하기 위해 수차 관계부서에 매립면허 신청을 추진하였으나 협의과정에서 자치단체 공영개발 사업추진 계획이라는 사유로 불허 처분되어 그 뒤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존치되어 금회 사하구의회에 지역주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관련기관에 건의토록 공유수면 매립 청원을 제출케 되었음.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주변환경과 입지여건상으로 볼 때 도시 재정비 차원에서 향후 청원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매립 등 개발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재 해당 지역이 건설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제외되어 있고 도시계획시설 및 용도 지역이 시설녹지 및 공업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어 매립면허 시행에 필요한 이러한 제약 요건들이 우선 해소되도록 하는 행정조치는 별도 관련부서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일문일답식으로 진행)

질	의	답	변 (한정동 의원)
○ '88. 5월경 유신토건과 흥터어촌계에서 신청한 매립면허가 항만청에서 반려된 사유는? (김광옥 위원)		○ 부산시와의 협의과정에서 공영개발사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부산시의 방침에 의거 매립 동의가 불허된 것으로 알고 있음.	
○ '91. 5. 13 부산시에서 사하구청으로 하여금 공공사업으로 추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구청의 최종 검토 결과는? ○ 지역 주민과 협의후 배후지와 연계하여 구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라고 검토되었는데 이때 협의과정에서 주민 반응은 어떠했는지? (이석래 위원)		○ 용도지역이 공업지역으로 주거택지로 개발이 어렵고 부락 전체 이전문제에 있어 공영개발사업으로는 주민이 반대하고 주민자력개발을 계속 주장 해 오고 있음. 또한 해상신도시 건설과 관련 외곽순환도로 예정 구간에 대부분 편입 예정이며 건설부고시에 의거 매립기본계획에 제외되어 그 당시 구경영사업계획이 불가능하다는 구자체 검토 결과가 있었다고 함.	
○ '91. 2월 건설부고시 제52호에 의거 해당지역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제외된 것을 해당 주민들은 알고 있는지? (박수관 위원)		○ 마을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본 결과 모르고 있는 것 같음.	
○ '90년 이후 2~3년간에 걸쳐 부산시와 항만청간에 협의가 있었는데 그 당시 부산시에서 주민에게 매립면허에 대한 동의를 해 주지 않은 이유는? (김광옥 위원)		○ 부산시와 항만청 사이 협의과정에서 서로의 입장과 견해 차이로 아마 지연되고 보류되어 문제해결이 어려웠던 것 같음	

질 의	답 변 (한정동 의원)
○ 어민들의 생활실태와 매립시 어민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또한 본 특위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안으로 수용하려면 우선 행정기관에서 문제점 해소를 위해 사전 조치해야 할 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손판암 위원)	○ 항만은 어민들의 생계수단인데도 대규모 국가사업으로 여러가지 고초를 받고 있는 실정임. 만약 매립면허가 이루어진다면 물량장 확보 등 주변환경개선이 일괄 해소되므로 어민에게 많은 혜택이 예상됨. ○ 여러가지 행정제약 해소를 위해 먼저 부산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 및 용도지역을 시설녹지 및 일반공역지역에서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문제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해운항만청에서는 매립기본계획에 제외된 것을 재반영시켜야 주민 요구사항이 수용될 수 있을 것임.

5. 토론요지(찬성 : 손판암 위원)

- 본 공유수면 매립사항은 여러가지 과정으로 볼 때 매립 면허권자가 해운항만청장이며 부산시와 사하구청은 협의부서에 불과하다고 생각됨.

당초 본 지역 매립면허 신청이 자치단체 공영개발 사업 취지에 따라 부산시의 부동의에 따라 불허가 처리되어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부산시의 별도 매립 계획추진이 없는 한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매립면허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의견서를 채택 건의 하자는 찬성 토론

6. 심사결과 : 청원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 검토하도록 하는 건의서 형태의 의견서 채택

첨 부 : 의견서 1부. 끝.

청 원 의 건 서

□ 건 명 : 다대동 홍티부락 공유수면 매립건의 건

□ 청원인 :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산 2번지 박용웅 외 주민 60명

□ 소개의원 및 소개 년월일 : 한정동 의원, 1993. 10. 18

□ 청원요지

- 부산시민의 식수원 보호라는 대의명분 아래 시행된 하구둑 공사로 주변생태계 변화는 물론 어장의 황폐화로 인한 어획량의 감소로 어민 대다수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수자원개발공사가 매립사업을 시행하면서 마을 앞 빈지를 사업구역에서 제외함으로써 이 지역 일대가 각종 부유물의 집합지로 전락하여 쓰레기와 악취에 지역 주민들은 이중삼중의 고초를 당하고 있는 현실임
- 이에 청원인들은 어민들의 복리증진과 주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도심 속의 오지인 이 곳을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보다 나은 생의 터전을 마련토록 하기 위해 수차 관계부서에 매립면허 신청을 추진하였으나 협의과정에서 자치단체 공영개발사업 추진 계획이라는 사유로 불허 처분되어 그 뒤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존치되어 금회 사하구의회에 지역주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관련기관에 건의토록 공유수면 매립 청원을 제출케 되었음.

□ 의견내용

- 낙동강 하구 매립지와 육지부분사이의 수로와 연결된 공유수면에 위치한 홍티부락은 당초 하구둑 건설사업 구역에서 제외되어 자연매립으로 발생한 일부 빈지를 포함한 저습지로 주변이 형성되어 있으며 주민의 주거지는 일부 국유지와 공유수면을 접하고 표고가 낙동강 하구매립지보다 현저히 낮아 해수유통이 원활치 못하여 수질이 심히 오염된 상태로 방치되어 개발이 요청되는 공유수면임.
- 따라서 현지의 여러가지 입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88년도부터 동 지역에 대한 매립면허를 해운항만청에 신청하였으나 부산시와의 협의과정에서 주민자력개발 불가라는 방침아래 사하구청으로 하여금 공공사업으로 추진토록 검토지시 되었으나 구자체 타당성 검토에 따라 투자비 과다소요로 공영개발사업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음
- 상기 사항을 종합해 볼 때 동 지역에 대한 매립면허가 부산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방침에 의한 부동의에 따라 불허된 사항으로 구자체 매립사업계획이 더이상 추진되지 않을시 '92. 2. 4 건설부고시 제52호로 제외된 해당지역 공유수면 매립기본 계획을 재반영시켜 공유수면 매립법 제4조, 5조에 의거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매립면허를 적극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3. 10. 29.

부 산 직 할 시 사 하 구 의 회